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157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한 자동차소유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등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발송(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31. (23일간)

2. 공고대상

구분	차량번호	성명(상호)	사용본거지	비 고
본부과	143러538*	(주)한국*****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울길	자동차관리법제11조 변경등기일 2026.05.22. 등록일 2026.06.26.
본부과	11다220*	(주)인베*****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나무길	자동차관리법제11조 변경등기일 2025.12.26. 등록일 2026.07.06.
본부과	101도951*	이**	경기도 파주시 **읍터길	자동차관리법제13조 사망일 2026.01.09. 등록일 2026.08.03.
감경부과	91구807*	(주)피앤***	경기도 파주시 *지길	자동차관리법제11조 변경등기일 2023.03.08. 등록일 2026.08.19.
감경부과	91구807*	(주)피앤***	경기도 파주시 *지길	자동차관리법제11조 변경등기일 2022.03.17. 등록일 2026.08.19.
감경부과	16도066*	(주)라미**	경기도 파주시 *양로	자동차관리법제11조 변경등기일 2026.06.04. 등록일 2026.09.01.
감경부과	16도066*	(주)라미**	경기도 파주시 *양로	자동차관리법제11조 변경등기일 2024.10.08. 등록일 2026.09.01.
감경부과	84버063*	(주)지구****	경기도 파주시 *빛로	자동차관리법제11조 변경등기일 2025.05.01. 등록일 2026.09.03.

3. 기타사항

가.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1.2%)에 상당하는 가산금(최장60개월)이 가산되어 부과됩니다.

나. 자동차 소유자는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대체압류 포함)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031-940-47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08.

파 주 시 차 량 등 록 사 업 소 장